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06.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0호 및 제181호, 제182호로 2023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202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추가 내시된 사업의 구비 분담금, 법정 필수 경비, 필수 추진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의 편성을 위한 예산 조치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요청함.

3. 주요내용

가.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증감률(%)
합 계	1,006,489,950	845,581,136	160,908,814	19.03
일반회계	970,586,632	813,694,342	156,892,290	19.28
특별회계	35,903,318	31,886,794	4,016,524	12.60
의료급여	683,646	544,000	139,646	25.6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4,200	0	54,200	순증
주 차 장	33,587,505	30,547,502	3,040,003	9.95
건축안전	1,577,967	795,292	782,675	98.41

4.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가. 일반회계 ----- 156,892,290천원

1) 세입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비 고
계	970,586,632	813,694,342	156,892,290	
지방세 수입	193,111,153	216,834,446	△23,723,293	
보통세	192,395,581	216,118,874	△23,723,293	
지난년도 수입	715,572	715,572	0	
세외수입	81,660,367	81,660,367	0	
경 상 적 세외수입	67,219,150	67,219,150	0	
입 시 적 세외수입	9,495,937	9,495,937	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4,945,280	4,945,280	0	
지방교부세	17,396,000	17,396,000	0	
조정교부금 등	86,532,775	86,532,775	0	
자 치 구 조정교부금	86,532,775	86,532,775	0	
보 조 금	373,834,827	365,746,168	8,088,659	
국고 보조금	215,524,800	212,851,977	2,672,823	
시·도비 보조금	158,310,027	152,894,191	5,415,83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8,051,510	45,524,586	172,526,924	
보전수입 등	218,051,510	45,524,586	172,526,924	○ 순세계잉여금: 153,436,667 ○ '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사용잔액: 19,090,257

2) 세출예산 편성 내역 ----- 156,892,290천원

● 정책사업비 ----- 35,425,596천원

※ 주요 사업 편성 내역

동청사 시설보수(여의동, 영등포본동, 신길7동)(자치행정과)	97,820 천원
영등포동 자치회관 다목적 공간 조성(자치행정과)	230,858 천원
지역문화축제 지원(문화체육과)	22,000 천원
동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지원(문화체육과)	54,000 천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 시설 건립(문화체육과)	2,274,000 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지역경제과)	2,000,000 천원
선유도서관 리모델링 및 문래도서관 환경개선(미래교육과)	1,502,000 천원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복지정책과)	42,000 천원
하정어린이집 리모델링(보육지원과)	433,031 천원
산후조리경비 지원(보육지원과)	982,000 천원
경로당 중식비 지원(어르신장애인과)	455,700 천원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및 집행 정산인 수당지원(어르신장애인과)	153,000 천원
경로당 전자제품 등 구입(어르신장애인과)	173,000 천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어르신장애인과)	121,380 천원
빗물관리시설(띠녹지)조성(푸른도시과)	500,000 천원
여의도일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푸른도시과)	500,000 천원
반지하주택 차수시설 설치(치수과)	200,000 천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교통행정과)	144,000 천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교통행정과)	31,000 천원
공동주택 관리지원(경로당 개보수)(주택과)	200,000 천원
경부선일대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도시계획과)	300,000 천원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도시계획과)	50,000,000 천원
손해배상금(조선선재 착공반려 관련)(건축과)	12,083,446 천원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법창 설치(건축과) 700,433 천원
 의회 청사 관리(회의실 조성)(의회사무국) 77,000 천원

- '22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20,674,577천원
- 예비비 ----- 16,097,366천원
 - ▶ 일반예비비: 2,800,000천원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297,366천원
- 행정운영경비----- 899,164천원
 - ▶ 인건비: 614,416천원
 - ▶ 직급보조비: 302,446천원
 - ▶ 연금부담금 등: △17,698천원
- 기금전출금 및 예탁금----- 83,795,587천원

나. 특별회계 ----- 4,016,524천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139,646천원

- 세입
 - ▶ 순세계 잉여금: 108,312천원
 - ▶ 보조금 사용잔액: 31,334천원
- 세출
 - ▶ 보조금 반환금: 139,646천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 54,200천원

- 세입
 - ▶ 국고보조금: 54,200천원

● 세출

▶ 시설비: 54,200천원

■ 주차장 특별회계 ----- 3,040,003천원

● 세입

▶ 순세계 잉여금: 2,983,356천원

▶ 보조금 사용잔액: 56,647천원

● 세출

▶ 인력운영비: 10,962천원

▶ 예탁금: 2,971,203천원

▶ 보조금 반환금: 57,838천원

■ 건축안전 특별회계 ----- 782,675천원

● 세입

▶ 순세계 잉여금: 731,958천원

▶ 보조금 사용잔액: 50,717천원

● 세출

▶ 건축물 안전점검 등 사업비: 725,317천원

▶ 보조금 반환금: 57,358천원

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최종예산	기정액	증감액 [추경편성액]	증감률(%)
총 계		325,916,873	263,814,805	62,102,068	23.54
감사담당관		316,478	316,478	0	0
행정국	총 무 과	124,204,038	121,610,942	2,593,096	2.13
	홍보미디어과	6,730,552	6,730,052	500	0.01
	자치행정과	13,958,844	13,549,670	409,174	3.02
	문화체육과	30,086,496	27,006,019	3,080,477	11.41
	민원여권과	1,351,892	1,351,892	0	0.00
기 획 재정국	기 획 예 산 과	59,225,446	11,332,493	47,892,953	422.62
	지 역 경 제 과	8,202,022	5,717,584	2,484,438	43.45
	일 자리 정 책 과	7,276,756	7,113,947	162,809	2.29
	재 무 과	706,418	706,418	0	0.00
	징 수 과	890,908	886,046	4,862	0.55
	부 과 과	1,097,756	1,090,930	6,826	0.63
미래비전 추진단	비전협력과	749,936	558,360	191,576	34.31
	미래교육과	33,055,283	31,301,401	1,753,882	5.60
보건소	보건위생과	11,050,357	10,979,474	70,883	0.65
	감염병관리과	14,557,284	13,420,049	1,137,235	8.47
	건강증진과	11,026,053	8,924,862	2,101,191	23.54
	의 약 과	1,430,354	1,218,188	212,166	17.42

라.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일반회계)

【감사담당관】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계	316,478	316,478	0	변동사항 없음

【행정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계	176,331,822	170,248,575	6,083,247	3.57% 증
총무과	124,204,038	121,610,942	2,593,0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청사 관리 71,825 ○ 보건소 관리 41,903 ○ 별관 청사관리 269,614 ○ 직원 후생복지 운영 234,000 ○ 인력운영비 263,175 ○ 국고보조금 반환금 838,968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73,611
홍보미디어과	6,730,552	6,730,052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0
자치행정과	13,958,844	13,549,670	409,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93,200 ○ 신길6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40,000 ○ 동청사 시설 보수 97,820 ○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7,000 ○ 주민자치 기능 향상 294,858 ○ 자치회관 환경개선 230,858 ○ 자원봉사센터 운영 2,175 ○ 국고보조금 반환금 2,979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7,542
문화체육과	30,086,496	27,006,019	3,080,4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립예술단 운영 4,000 ○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 10,100 ◦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22,000 ◦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 47,051 ◦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30,520 ◦ 구생활체육교실 운영 21,675 ◦ 핫들핫들 서울유아 스포츠단 운영 48,030 ◦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조성 40,000 ◦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5,000 ◦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54,000 ◦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2,274,000 ◦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 52,832 ◦ 국고보조금 반환금 93,362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8,947
민원 여권과	1,351,892	1,351,892	0	변동사항 없음

【기획재정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계	77,399,306	26,847,418	50,551,888	188.29% 증
기획 예산과	59,225,446	11,332,493	47,892,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16,097,366 ◦ 기금전출금 1,795,587 ◦ 예탁금 30,000,000
지역 경제과	8,202,022	5,717,584	2,484,4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35,200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50,444 ◦ 도시농업 활성화 12,634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295,680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영시설주차장 이용보조) △57,798 ◦ 노후전선 정비사업 42,750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5,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247,326 ◦ 남서울상가 시설현대화(전환사업) 19,593 ◦ 국고보조금 반환금 654,982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3,723 ◦ 기금전출금 2,000,000
일 자리 정책과	7,276,756	7,113,947	162,8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52,805 ◦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 140,391 ◦ 4차산업 청년취업 지원 △46,000 ◦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관리 및 집수리 전문인력) 4,804 ◦ 국고보조금 반환금 108,053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8,366
재무과	706,418	706,418	0	변동사항 없음
징수과	890,908	886,046	4,862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4,862
부과과	1,097,756	1,090,930	6,826	◦ 국고보조금 반환금 6,826

【미래비전추진단】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계	33,805,219	31,859,761	1,945,458	6.11% 증
비전 협력과	749,936	558,360	191,576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1,576
미래 교육과	33,055,283	31,301,401	1,753,8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센터 운영 82,000 ◦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 142,909 ◦ 구립 선유도서관 공간개선 522,000 ◦ 구립 도서관 환경개선 980,000 ◦ 국고보조금 반환금 4,037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936

【보 건 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38,064,048	34,542,573	3,521,475	10.19% 증
보 건 위 생 과	11,050,357	10,979,474	70,8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운영비 23,122 ◦ 국고보조금 반환금 1,446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6,315
감 염 병 관 리 과	14,557,284	13,420,049	1,137,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상담실 운영 8,000 ◦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11,000 ◦ 국가예방접종 실시 7,831 ◦ 코로나19 예방접종 0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1,130 ◦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539,650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관리 87,450 ◦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3,881 ◦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19,000 ◦ 암 환자 치료비 지원(전환사업) 15,000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8,350 ◦ 국고보조금 반환금 278,683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3,022
건 강 증 진 과	11,026,053	8,924,862	2,101,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1,145,791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5,00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00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200,000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시비) 1,000 ◦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20 ◦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 23,000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4,314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30,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건강관리(통합건강증진사업) 0 ◦ 치매안심센터 운영 199,816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5,000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00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 236 ◦ 자살유족 지원사업 2,088 ◦ 마음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 2,500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기간제) 37,440 ◦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인건비(사비) △22,662 ◦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건비(사비) △7,400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0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구비) 158 ◦ 국고보조금 반환금 75,067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6,014
의 약 과	1,430,354	1,218,188	212,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172,800 ◦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35,900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34,800 ◦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58,080 ◦ 보건분소 운영 3,500 ◦ 국고보조금 반환금 9,964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282

5. 검토의견

가.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638억 1,500만원에서 621억 200만원이 증액된 3,259억 1,700만원으로 증감률은 23.54%임.

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 행정국

○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02억 4,900만원 대비 60억 8,300만원 증액(3.57%)된 1,763억 3,200만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별관 청사 리모델링, 노후 동청사 시설보수, 자치회관 환경개선사업,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센터 건립, 직원 후생복지 등이 증액 편성되고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건립사업 등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임.

-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9,300만원 증액(2.13%)된 1,242억 400만원으로 계상됨.

이는 구청 본관·보건소·별관 청사관리 사업에서 2023년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미반영분 1억 6,000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별관 G동 리모델링 공사와 별관 A동 부서 재배치 공사 등 시설비 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생일 축하지원금이 타 자지구 평균을 하회하여 상향 조정한 직원 후생복지 운영비 2억 3,400만원, 2023년 직급보조비 인상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직급별로 2만원 이내 인상)을 고려한 인력운영비 2억 6,3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에 기인함.

-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900만원이 증액(3.02%)된 139억 5,900만원이 계상됨.

이는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임시청사 계약('23년 3월)에 따른 임차보증금(1억 5,000만원→0원) 및 임차료 변동사항 등(1억 2,000만원→7,700만원)을 반영하여 1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의동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영등포본동 및 신길7동의 균열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는 동청사 시설 보수 사업 9,800만원,

영등포동 자치회관의 유휴공간을 다목적회의실로 공간조성하는 자치회관환경개선사업 2억 3,1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에 기인함.

-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8,000만원이 증액(11.41%)된 300억 8,600만원이 계상됨.

이는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예술향유 취약층이 있는 시설을 찾아가서 국악, 서커스 등 프로그램을 공연하는 **동네방네 공연 유랑단 운영** 사업이 3,000만원 신규 편성되고, 신길동 116-17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내 2층 기부채납 공간에 생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조성**이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비 4,000만원, 2026년 1월까지 총 사업비 321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등을 갖춘 지상 4층 규모의 종합체육시설(연면적 4,074㎡)을 건립하는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으로 12억 5,3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10억 2,1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하여 22억 7,400만원 등이 증액됨에 기인함.

(2) 기획재정국

-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8억 4,700만원 대비 505억 5,200만원이 증액(188.29%)된 773억 9,900만원으로, 재해·재난목적 및 일반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 전출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이 감액 편성됨.
-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478억 9,300만원이 증액(422.62%)된 592억 2,500만원이 계상된 바,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하는 일반예비비는 28억이, 예비비 편성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32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전출금(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계정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 초과하거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재원조성하는 것으로 17억 9,600만원이, 기금예탁금(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원으로 300억이 증액 편성됨.

-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8,400만원이 증액(43.45%)된 82억 200만원이 계상됨.

이는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업체 기초환경 개선 및 설비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이 5,000만원 신규 편성되고 중소기업육성 기금 전출금 20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2억 9,600만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공영사설주차장 이용보조) 5,700만원은 2023년 예산으로 예정되었던 국·시비가 미반영됨에 따른 사업 종료로,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고유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고 온라인 진출 역량을 향상하고자 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2억 4,700만원 등이 공모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전액 감액됨.

-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300만원이 증액(2.29%)된 72억 7,700만원이 계상됨.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브랜드, 기술개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서울시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아 1억 5,300만원 전액 감액되고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의 하반기 운영예산(인건비, 운영비) 1억 1,800만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비 2,2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됨에 기인함.

(3) 미래비전추진단

○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8억 6,000만원 대비 19억 4,500만원이 증액(6.11%)된 338억 500만원으로, 교육복지센터 및 융합인재교육센터의 이전에 따른 경비, 구립 선유도서관 공간개선사업, 구립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비 등이 증액편성됨.

- 미래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5,400만원이 증액(5.60%)된 330억 5,500만원이 계상됨.

이는 교육복지센터가 올해 12월말로 임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구 시설인 당산로 235로 이전을 위한 건물의 공사 비용 및 이전 비용 8,200만원, 융합인재교육센터가 현재 별관 청사 2층에서 2023년 9월 개청 예정인 신길6동 신청사 내로 이전을 위한 철거 및 이전비 등 1억 4,300만원이 증액되고,

스페이스T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트윈세대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선유도서관을 전체 리모델링 하는 구립 선유도서관 공간 개선 사업은 본 예산에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으나 원자재 및 노무비 증가, 안전성 증대를 위한 난간 교체 등 공사 범위의 확대에 따라 5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립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문래도서관 공간개선을 위해 교부 받은 2021년 특별교부세 잔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립 도서관의 고장시설, 노후가구 교체 등 환경개선 공사비 9억 8,000만원 증액됨에 기인함.

(4) 보건소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5억 4,300만원 대비 35억 2,100만원이 증액(10.19%)된 380억 6,400만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상황실 지속 운영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수술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응급 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임.
- **보건위생과** 기정예산 대비 7,100만원이 증액(0.65%)된 110억 5,000만원이 계상됨.
이는 2023년 직급보조비 인상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직급별로 2만원 이내 인상)에 따른 인력 운영비 2,3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에 기인함.
- **감염병관리과** 기정예산 대비 11억 3,700만원이 증액(8.47%)된 145억 5,700만원이 계상됨.
이는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사업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2단계 조정 시까지 코로나19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상황실 지속 운영이 필요하며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5억 4,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됨에 기인함.
- **건강증진과** 기정예산 대비 21억 100만원이 증액(23.54%)된 110억 2,600만원이 계상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수가 1,047건에서 2,497건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11억 4,6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바우처 평균단가(166천원 증) 상향으로 2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원 등이 증액됨에 기인함.

- **의약과** 기정예산 대비 2억 1,200만원이 증액(17.42%)된 14억 3,000만원이 계상됨.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은 응급환자 진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대림성모병원, 명지성모병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300만원, 의료기관에 CCTV설치를 지원하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3,600만원, 소방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에 3,400만원 등이 증액됨에 기인함.

다. 기금운용계획(안)

(1)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변경대상 :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 변경요구액: 2,300만원
- 변경사유 : 고향사랑 기부금, 이자수입 수령에 따른 수입·지출 계획 변경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2,3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2,300만원으로 편성됨.

- 수입 증감액은 2,3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20천원,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지출 증감액은 2,300만원으로 예치금 2,300만원 신규 편성함.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 대상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변경요구액: 333억 3,500만원
- 변경 사유 : 2022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및 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 기금예탁금 수령에 따른 수입·지출 계획 변경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정책사업의 2/10 이상 금액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에서 217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333억 3,500만원 증액 변경함에 따라 550억 6,600만원으로 편성됨.

- 수입 증감액은 333억 3,500만원으로 예수금 329억 7,100만원, 이자수입 3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 회수 482천원 감액 편성함.
- 지출 증감액은 333억 3,500만원으로 예치금 333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함.

-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 대상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변경요구액: 18억 2,000만원
 - 변경 사유 :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일반회계전출금 수령에 따른 수입·지출 계획 변경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정책사업의 2/10를 초과하여 금액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당초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18억 2,000만원이 신규편성됨에 따라 1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됨.
- 수입 계획은 18억 2,000만원으로 전입금 17억 9,600만원, 이자수입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지출 증감액은 18억 2,000만원으로 예치금 18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3)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 대상 :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변경요구액: 16억 1,400만원
 - 변경 사유 : 2022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및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수령에 따른 수입·지출 계획 변경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정책사업의 2/10를 초과하여 금액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에서 74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6억 1,400만원 증액 변경함에 따라 90억 9,800만원으로 편성됨.

- 수입 증감액은 16억 1,400만원으로 전입금 20억, 이자수입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억 5,1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8,900만원 감액 편성함.
- 지출 증감액은 16억 1,400만원으로 융자성 사업비 22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예치금 6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됨.

마. 검토결과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가 편성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우리동네 작은 체육관 조성,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감염병관리로 구민이 안전한 영등포를 조성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심신이 위축된 구민의 건강 및 문화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위원회 소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49억으로, 증액된 예산액 621억 200만원의 7.9%에 해당됨.

비록, 전체 예산액 대비 반환금 비율은 적으나 국·시비 보조사업은 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매칭사업으로 각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보조금 확보시 사전검토가 요구되며,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세외수입의 징수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구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3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 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